

# 효도계약서 작성법

자식들에게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줬다가 부양을 못 받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럴 때 해결책은 없을까? 효도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노후 안전장치로 떠오르고 있는 효도계약서에 대해 살펴보자.



## 방효석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bhs0319@hanafn.com

- ▶ **학력·자격증**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년) / 변호사
- ▶ **저서**  
알고 싶은 부자들의 세금·법률 상담 사례집
- ▶ **경력**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조정위원  
서울시, 재향군인회 등 자문  
KBS, SBS스페셜(상속), YTN 등 출연  
조선일보, 동아일보 상속증여 칼럼 다수 기고  
(現)한국 가족법 학회 정회원

효도계약서에 관심을 갖는 부모들이 점점 늘고 있다. 효도계약을 어긴 아들에게 부모가 증여해 준 재산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물론 효도계약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천륜인 효도를 어떻게 계약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성급하게 재산을 물려주고 자녀의 불효로 후회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본인 스스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효도계약을 통해서라도 부양받을 권리를 찾는 것이 가정 분쟁을 대폭 줄일 수

## S Summary

- ① '효도계약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되, 효도라는 '조건'을 붙여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효도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불효 시 물려준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 ③ 효도의 조건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가족 모임에서 자식들과 효도계약서를 쓰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대법원이 효도계약을 어긴 아들에게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50~60 대의 송년, 신년 모임에서 화제가 되면서 이미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 부모들까지 효도계약서를 쓰자고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효도계약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사주거나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자식은 부모에게 봉양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을 담은 각서를 말한다. 민법상 자식에게 조건 없이 증여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섬볼리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줬다가 나중에 홀대 받거나 버림받을 것을 우려한 부모들이 안전장치로 효도계약서 쓰기에 나선 것이다.

자산관리 상담해 주는 시중은행 지점에 효도계약서 작성 방법을 문의하는 사람도 부쩍 늘었다고 한다. 중산층이 주로 찾는 지점에서는 변호사나 자산관리 전문가 등이 효도계약서 작성을 상담해 주는 은행도 생겨났다.

KEB하나은행 소속 방효석 변호사는 "작년 초까지는 효도계약서를 쓰라고 권해도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계약서를 쓰느냐'며 안 하겠다는 손님이 많았는데, 최근엔 한 달에 3~4명이 효도계약서 초안 작성을 도와 달라고 요청한다"고 했다. <2016. 1. 5. 조선일보 기사 중 발췌>

있는 방법이다. 이런 점을 반영해 작년에는 효도계약서를 '법'으로 강제하는 이른바 '불효자방지법' 제정을 국회에서 추진하기도 했다.

### 불효 시 증여 재산을 반환할 수 있어

효도계약서는 언제 필요할까? 예를 들어보자. 몇 년 전 퇴직한 A는 아들의 결혼을 대비해 아들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주려고 한다. 그 아파트는 A가 받은 퇴직금 및 그동안 모아 온 재산을 합쳐서 구입한 것으로 A의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A는 그 아파트를 아들에게 줄 경우, 아들의 마음이 바뀌어 자신에게 효도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 경우 A는 효도계약서 작성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효도계약서는 민법에 원래부터 있던 제도로, '조건부 증여'의 일종이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해 주되, 효도라는 '조건'을 붙여 증여하는 것이다. 참고로 효도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자녀'를 대상으로 효도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조카'에게 재산을 주면서 추후 자신의 부양을 부탁할 수도 있다. 또한 그

조건이 반드시 '효도'일 필요도 없다. 종교법인 및 복지법인 기부를 조건으로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추후 자신의 사망 시 '장례절차'를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할 수도 있다. 즉 당사자 일방이 타방에게 재산을 주되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붙이고, 상대방이 그 조건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수많은 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효도'인 것이다.

효도의 조건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매달 부양료를 지급하라고 할 수도 있고, 노후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될 경우 병원비를 지급하라고 할 수도 있다. 또는 1년에 몇 차례씩 방문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다.

효도계약서 작성 시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계약서에 '부모에게 불효 시 물려준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효도계약서가 완성되는 것이다. 본래 증여계약은 한 번 등기까지 넘어가면 이를 되찾아올 수 없는데, 이를 막는 것이 바로 위의 문구이다. 따라서 위 문구는 효도계약서의 핵심이다.

다만 효도계약서 작성 시 부담해야 하는 조건 또는 그 의무는 증여하는 물건의 가치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1억 원 상당의 물건을 주면서 10억 원 상당의 의무를 요구하면 안 된다. 만약 A가 적법한 효도계약서 작성을 통해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추후 아들의 불효 시 A는 증여해 준 아파트를 되찾아올 수 있다. **ㅎ**

